

#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3499호
----------	--------

제출년월일 2024. 8. .  
제출자 김포시장

## 1. 제안이유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 5. 17.시행) 및 문화재 명칭·분류체계를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김포시 조례에 인용한 상위법령 및 도 조례 제명 및 조문 등을 현행화하여 법령 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 「국가유산기본법」의 취지에 맞춰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와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로 개정하고 유·무형유산을 포괄 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 우리 시 문화재 표기 조례를 부칙으로 일괄 개정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행정·법제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로 변경함
- 나. 향토유산 정의 및 지정 등(안 제2조, 제8조, 별표 1)
  - 현행조례의 ‘향토유적’ 용어를 ‘향토유산’ 으로 변경함
  - ‘향토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 함
- 다.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향토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시책의 수립·시행 의무 규정함
- 라. 김포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 ~ 제7조)
  -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함
- 마. 향토유산의 관리, 기록작성 및 보관, 홍보 등(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 관리자 지정, 경비보조, 관리점검 및 기록보존, 홍보 등 유사한 내용의 조문을 통폐합 함
- 바. 무형유산 보호·육성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1조)

사.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안 부칙 제4조)

아. 문화재 명칭 변경사항 준비를 위한 다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제5조)

- 문화재 ⇒ 국가유산(문화유산 / 자연유산 / 무형유산)

( ‘문화재’ 혹은 두 종류 이상의 유산을 지칭하는 경우 ‘국가유산’ )

- 개정 법률 및 도 조례 제명 변경

- 기관명 변경(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나. 관계 법령 및 현행 자치법규 : 붙임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4. 7. 4. ~ 7. 24. (20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2) 부서협의결과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다) 부패영향평가 : 의견 있음(붙임)

####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가) 중앙부처 :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정책기획단

나) 경 기 도 : 문화유산과

##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의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를 보호하고 김포시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국가나 경기도의 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않은 김포시 관내 국가유산 중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것을 말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김포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교육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

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1명)

나.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 또는 변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김포시에 연속하여 3년 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전승활동을 하였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관계 전문가에게 지정 가치 등에 대해 조사·검토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 중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

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나 경기도의 유산으로 지정·등록된 때에는 지정·등록고시 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효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한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및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제10조(향토유산의 관리)** ① 향토유산의 관리는 그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향토유산 소재지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향토유산을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무형유산 보호·육성)** ① 시장은 김포시의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무형유산을 보호·육성 하여야 한다.

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그 밖에 전통 계승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무형유산의 전송, 교육, 공연, 전시,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보유자 등에 대한 전송활동비
3. 그 밖에 시장이 무형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기록작성 및 보관)**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향토유산을 홍보 및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향토유산 보호 및 향토유산 활용을 통한 가치 확산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적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김포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김포시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 를 “국가유산” 으로 한다.

별표 1의 재난 및 사고의 유형란 제21호 중 “문화재” 를 “국가유산” 으로 한다.

② 김포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③ 김포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④ 김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 을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으로 한다.

⑤ 김포시 야생생물보호구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 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 으로, “문화재청장” 을 “국가유산청장” 으로 한다.

⑥ 김포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도시경관·문화재” 를 “도시경관·국가유산” 으로 한다.

⑦ 김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 를 “국가유산” 으로 한다.

⑧ 김포시 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 를 “국가유산” 으로 한다.

- ⑨ 김포시 향교·서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로” 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로 한다.
- ⑩ 김포통진두레놀이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를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로, “무형문화재” 를 “무형유산” 으로 한다.  
제14조 중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 를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소관 실·과·소		문화예술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성 명	문화예술과장 최 명 순
	팀 장 직위·성명	문화유산팀장 황 선 회
	담 당 자 성명·전화	문화유산팀장 황 선 회(☎2474)

[별표 1]

김포시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향토유산의 종 별	지정 기준
문화유산	<p>1. 건조물로서 향토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p> <p>가. 목조건축물류 당탑·궁전·성문·전묘·사우·서원·누정·향교·관아·객사·민가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p> <p>나. 석조건축물류 석굴·석탑·전탑·부도 및 석종·비각·석등·석교·석계·석단·석빙고·침성대·당간지주·석표·석정 등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p> <p>다. 분묘 분묘 등의 유구 또는 그 부분·부속물 또는 건조물의 모형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가치가 있는 것</p> <p>2. 전적·서적·고문서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p> <p>가. 전적류</p> <p>1) 사본류에 있어서는 한글서적·한자서적·저술교본·종교서적 등의 원본이나 우수한 고사본 또는 이를 계통적·역사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것</p> <p>2) 판본류에 있어서는 판본 또는 판목으로서 역사적 또는 판본학적 가치가 있는 것</p> <p>3) 활자본류에 있어서는 활자본 또는 활자로서 역사적 또는 인쇄사적 가치가 있는 것</p> <p>나. 서적류 사경·어필·명가필적·고필·목적현관·주련 등으로서 서예사상 우수한 것이나 금석학적 또는 사료적 가치가 있는 것</p> <p>다. 고문서류 역사적 가치 또는 사료적 가치가 큰 것</p> <p>3. 회화·조각</p> <p>가. 형태·품질·기법·제작 등에 특이성이 있는 것</p> <p>나. 향토문화 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p> <p>다. 회화 또는 조각으로서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p> <p>라. 역사상 우수한 작가 또는 유파를 대표하는 작품</p> <p>마.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p> <p>4. 공예품</p> <p>가. 형태·품질·기법 또는 용도에 특성이 있는 것</p> <p>나. 향토문화 발전상 각 시대의 귀중한 유물로서 그 제작이 우수한 것</p> <p>다. 외래품으로서 우리나라 문화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것</p>

5. 고고자료

- 가. 선사시대의 유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나. 고분(지석묘 등을 포함한다)·패총 또는 사적유적 등의 출토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것
- 다. 전세품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 라. 종교·교육·학예·산업·정치·군사·생활 등의 유적출토품 또는 유물로서 역사적 의의가 있고 학술적 자료 또는 제작 기술상 가치가 있는 것

6. 무구

- 가. 우리나라 전사상 사용된 무기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
- 나. 역사상 명장이 사용하였던 무구류로서 군사상 그 의의가 있는 것

7. 유사이전의 유적

- 가. 패총·유물포함층·주거지(수혈주거지·부석주거지·동혈주거지 등) 지석·입석·고분 등의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8.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

- 가. 사지·사우지·제단·사고지·전묘지·향교지, 그 밖에 제사신앙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는 것

9.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 가. 성곽·성지·책채·방루·진보·수영지·관문지·봉수대 및 유지·고전장·도읍지·궁전지·고도·고궁, 그 밖에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0.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

- 가. 고도(옛길)·교지·뚝·제방·요지·시장지·식물재배지·석표, 그 밖에 산업교통·토목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1. 교육·사회사업에 관한 유적

- 가. 서원·사숙·자선시설·석각, 그 밖에 교육·학예에 관한 유적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2. 분묘

- 가. 분묘·비·구택·원지·정천·수석, 그 밖의 중요한 전설지 등으로서 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

1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중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

- 가. 의·식·주에 관한 것  
궁중·귀족·서민·농어민·천인 등의 의복·의신구·음식용구·광열용구·가구·사육공구·관혼상제용구·주거, 그 밖의 물건 또는 그 재료 등
- 나. 생산·생업에 관한 것  
농기구·어렵구·공장용구·방직용구·작업장 등

	<p>다.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운반용의 배·수레·역사 등</p> <p>라. 교역에 관한 것 계산용구·계량구·간판·점포·감찰·화폐 등</p> <p>마. 사회생활에 관한 것 증답용구·경방용구·형벌용구 등</p> <p>바. 신앙에 관한 것 제사구·법회구·봉납구·우상구·사우 등</p> <p>사. 민속지식에 관한 것 역류·점복용구·의료구·교육시설 등</p> <p>아. 민속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 의상·악기·가면·인형·완구·절귀용구·도구·무대 등</p> <p>14. 민속자료가 일정한 구역에 집단적으로 소재한 경우에는 민속자료의 개별적인 지정에 갈음하여 그 구역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집단민속자료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가. 한국의 전통적 생활양식이 보존된 것</p> <p>나. 고유민속행사가 거행된 곳으로 민속적 풍경이 보존된 곳</p> <p>다. 한국건축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민가군이 있는 곳</p> <p>라. 한국의 전통적인 전원생활의 면모를 간직하고 있는 곳</p> <p>마. 역사적 사실 또는 전설·설화와 관련이 있는 곳</p> <p>바. 옛 성터의 모습이 보존되어 고풍이 현저한 곳</p>
<p>자연유산</p>	<p>1. 명승</p> <p>가. 유명한 건물이 있는 경승지 또는 원지</p> <p>나. 진귀한 화수·화초·단풍 또는 조수·어충류의 서식지</p> <p>다. 유명한 협곡·급류·심연·폭포·호소 등</p> <p>라. 그 밖의 명승지</p> <p>마. 유명한 풍경의 전망지점</p> <p>바.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온천지·냉광천지</p> <p>2. 천연기념물</p> <p>가. 동식물</p> <p>1) 지방특유의 동식물로서 진귀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p> <p>2) 석회암지대·사구·동물·건조지·습지·하천·호소·폭포의 소·온천·하구 등 특수지역이나 특수환경에서 서식하거나 생장하는 특유한 동식물 또는 동식물군 및 그 서식지·생장지 또는 도래지</p> <p>3) 진귀한 동식물로서 그 보존이 필요한 것 및 그 서식지·생장지</p> <p>4) 지방특유의 축양동물</p> <p>5) 문화적·과학적·경관적·학술상 가치가 있는 사충·명목·거수·노수·기형목</p> <p>6) 원시림·고산식물지대 또는 진귀한 산림상</p> <p>7) 진귀한 동식물 분포의 경계가 되는 곳</p>

	<p>8) 생활·민속·의식주·신앙·문화 등과 관련된 유용 동식물의 원산지  9) 귀중한 동식물의 유물발견지 또는 학술상의 중요한 표본과 화석</p> <p>나. 지질·광물</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암석 또는 광물의 생성원인을 알 수 있는 상태의 대표적인 것</li> <li>2) 거대한 석회 등 또는 저명한 동굴</li> <li>3)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는 암석 또는 진귀한 지형</li> <li>4) 지층단 또는 지괴운동에 관한 현상</li> <li>5) 학술상 특히 진귀한 표본</li> <li>6) 온천 및 냉광천</li> </ol> <p>다. 천연보호구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보호할 만한 천연기념물이 풍부하거나 다양한 생물적·지구과학적·문화적·역사적·경관적 특성을 가진 대표적인 일정한 구역</li> <li>2) 지구의 주요한 진화단계를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li> <li>3) 중요한 지질학적 과정·생물학적 진화 및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을 대표하는 일정한 구역</li> </ol> <p>라. 자연현상</p> <p>관상상·과학상·교육상의 가치가 현저한 것</p>
무형유산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고 향토문화 보존상 필요한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극 : 인형극·가면극</li> <li>2. 음악 : 제례악·연례악·대취타·가곡·가사 또는 시조의 명창·산조·농악·잡가·민요·무악·범패</li> <li>3. 무용 : 의식무·정재무·탈춤·민속무</li> <li>4. 공예기술  도자기공예·피모공예·골각공예·금속공예·나전칠공예·제지공예·목공예·건축공예·지물공예·직물공예·염색공예·옥석공예·수·매듭공예·복식공예·악기공예·초고공예·죽공예·무구공예</li> <li>5. 그 밖의 의식·놀이·무예·음식제조 등</li> <li>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예능의 성립 또는 구성상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기법이나 그 용구 등의 제작·수리 등의 기술</li> </ol>



김포시 향토유산 제 호

## 김포시 향토유산 지정서

명 칭 :

위 치 :

소유자(보유자) :

상기 유산을 「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8조에 따라 김포시 향토유산(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인

(뒷쪽)

소유자 (보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교부(재) 연월일	기록인
<b>[변 경 사 항]</b>				
소유자 (보유자)	주 소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변경연월일	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지정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산의 소유자(기능 보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산의 기능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4. 향토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동물·식물·지형·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집단과 역사·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제13조(국가유산의 지정·등록)** ① 국가는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국가지정유산으로 지정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중요한 것을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 등으로 지정·등록하여 보호할 수 있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유산”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및 도래지를 포함한다)

나. 식물(그 군락지를 포함한다)

다. 지형,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자연현상

라. 천연보호구역

마. 자연경관: 자연 그 자체로서 심미적 가치가 인정되는 공간

바. 역사문화경관: 자연환경과 사회·경제·문화적 요인 간의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 또는 생활장소

사. 복합경관: 자연의 뛰어난 경치에 인문적 가치가 부여된 공간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취득·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유산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복원·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특별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출입 제한) ①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적을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조례에서 “향토유적”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향토의 역사·예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2. 향후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3. 향토문화·토속·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정 향토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2. 향토유적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
3. 향토유적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향토유적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5. 향토유적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향토유적 등 보존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 성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문화국장,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1명을 포함하여 문화재 및 향토문화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시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할 때
4.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향토유적 지정)** 1945년 이전 유적으로서 향토유적의 지정은 시장이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정한다.

**제14조(향토유적 지정 신청)** ① 향토유적으로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 향토유적 지정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향토유적 지정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5조(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적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지정 향토유적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서의 교부등)** ① 지정된 향토유적은 별지 제2호 서식 향토유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 향토유적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지정의 해제)** 시장은 지정한 향토유적 중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8조(고시)** 시장은 향토유적의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의 지정 및 해제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13조에 따라 향토유적을 지정하였을 경우 지정된 향토유적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한다.

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지정향토유적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나 향토유적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20조(보존관리)**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적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향토유적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2. 향토유적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지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관리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안내판을 설치한다.
3. 향토유적 보호구역내에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향토유적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4. 향토유적 진입로 정비·경내정화사업·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관리점검 등)** ①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적에 대해 연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정된 향토유적에 대하여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경비보조 등)** ① 시장은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득이한 경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집중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공예품 등 향토유적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관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적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 시는 그 실황과 위치·이동사유·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홍보 등)** ① 시장은 향토유적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향토유적 보존의식을 확산하고 보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유적 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지정과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우수한 기능·예능을 보유한 사람 또는 단체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김포시의 전통과 문화유산을 전승·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김포시 무형문화재”란 김포시에서 전승되어 온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2. “전승자”란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김포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
2.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3. 전승자 발굴, 육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김포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김포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형문화재를 김포시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김포시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왔을 것
2.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경기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였을 것
3.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클 것

**제5조(김포시 무형문화재의 지정 해제)** 시장은 김포시 무형문화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가치의 소멸
2. 전승의 단절·불가능
3. 소멸위험이 현저히 없어졌을 경우

**제6조(전승자의 선발)**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김포시 무형문화재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를 매년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전승자의 선발 신청이 없는 경우와 전승자로 선발하기에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승자로 선발되려는 자는 시장에게 그 선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전승자로 선발할 수 있다.

1.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4. 신청일 당시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3년 이상 두는 것을 말한다)하고 있을 것

**제7조(전승자의 인정 해제)** 시장은 김포시 무형문화재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전승자가 사망하거나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전통문화의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국외로 이민을 가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4. 제5조에 따라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6. 제8조에 따른 보존·전승활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동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보존·전승 활동) 전승자로 선발된 사람 또는 단체는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
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
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9조(전수장학생의 선발 등) ①** 시장은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전수 및 보존을 위하여 전승자에게 김포시민 중 희망자는 자를 대상으로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승자는 제1항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 과정에서 능력이 인정되는 전수자를 전수장학생으로 선발하도록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김포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전승자 또는 보유 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김포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⑤ 시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시장은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전시, 보호 및 육성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전승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홍보, 포장재 개발비 등에 필요한 경비
3. 전승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4. 그 밖에 시장이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위원회의 설치)**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포시 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전승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

3. 김포시 무형문화재 및 전승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수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김포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김포시 교육문화국장
2. 무형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3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국외로 이주한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둔다.

② 간사는 김포시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서기는 김포시 무형문화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9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그 밖에 시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 자치법규명: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평가대상 조문

개 정 안	개선 의견
<p><b>제5조(위원회의 구성)</b></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생략</p> <p>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사람</p> <p>가. 생략</p> <p>나.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 관련분야에 <u>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u></p> <p>④ 위촉직 위원의 <u>임기는 2년으로 한다.</u></p>	<p><b>(개선권고)</b></p> <p>제5조 ③: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의 의미가 모호하고 정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및 판단이 이뤄질 위험이 있고 예측 가능성이 부족함.</p> <p>‘국가유산 및 향토문화 관련 분야에 관한 <u>몇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거나 학위 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u> 등의 추가 규정을 통하여 <b>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함.</b></p> <p>제5조 ④: 임기만 명시하여 연임 가능 여부를 알 수 없고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없음. 연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로비나 관련 업체 유착관계 등 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하다’ 등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b>개선권고함.</b></p>

**평가기준**

-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예측 가능성 구체화,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필요

**현황 및 문제점**

- 제5조 ③: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이라는 조건은 행정청의 자의적인 해석 및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결정하는 부정부패가 생길 위험성이 있고, 정확한 명시가 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저해됨
- 제5조 ④: 연임의 횟수 제한이 없을 경우 유착관계 등의 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음

**검토결과**

- 개선권고안을 참고하여 해당 조례에 적합하게 개정

#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 3533호
----------	---------

제출년월일 2024. 10. 04.  
제 출 자 정영혜 의원

## 1. 수정이유

- 「김포시 무형문화재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전승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나, 안 제11조제2항에서는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용어 정의가 없어 조례 해석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용어 정의가 필요함.

## 2. 주요수정내용

- 가. 정의 (안 제2조)
- 나. 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안 제9조)
- 다. 무형유산 보호·육성(안 제11조)

#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김포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보유자 등”이란 김포시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취득·보존하고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제1항 중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보유자 등**”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유산 보유자는**”을 “**보유자 등은**”으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u>&lt;신 설&gt;</u></p> <p>2. (생 략)</p> <p>제9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p> <p>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 <u>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및 관리자에게 통보한다.</p> <p>②·③ (생 략)</p> <p>제11조(무형유산 보호·육성) ① (생 략)</p> <p>② <u>무형유산 보유자</u>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③ (생 략)</p>	<p>제2조(정의)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보유자 등” 이란 김포시 무형유산의 기능 또는 예능을 원형대로 취득·보존하고 그 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u></p> <p>3. (현행 제2호와 같음)</p> <p>제9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p> <p>① ----- ----- ----- ----- <u>보유자 등</u> -----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1조(무형유산 보호·육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u>보유자 등</u>은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